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12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10. 2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제안이유

서울미래교육지구 출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미래교육의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혁신교육’ 및 ‘서울형혁신교육 지구사업’에 관한 정의를 ‘미래교육’ 및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한 정의로 변경함(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라.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붙임(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8.25. ~ 2023.9.14.)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미래교육지구¹⁾ 출범에 맞춰 관련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미래역량 함양의 자치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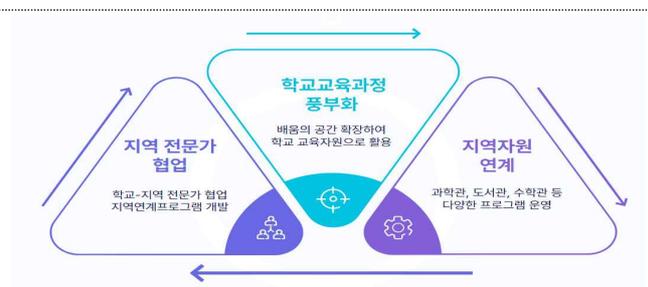
1) 서울미래교육지구

가. 운영기간: 2023. 2. 13. ~ 2024. 12. 31.

나. 대 상: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다. 주요사업

-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돌봄활동 통합지원
- 자치구 특화사업 확대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1. "각급 학교²⁾"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대상자를 말한다.
3. "미래교육"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강서구의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안 제3조 ~ 제4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및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특화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청장이 매년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안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단체·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관내 학교 현황(2023. 6월 공시 기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총계
개소	51	35	22	23	2	133

※ 기타 학교

- 성지중고등학교: 화곡로 182(화곡본동) 위치/ 평생교육시설

- 여명학교: 여준로 221-22(가양2동, 임시부지) 위치/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 안 제6조 ~ 제10조는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함
- 안 제11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사업 지원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음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자치구와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인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학생의 학습공간을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삶과 얽이 공존하는 교육을 실현하며 자치구별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26.] [서울특별시조례 제8832호, 2023. 7. 26.,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